

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훈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1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3일

발 의 자: 김경훈, 강석주, 김용호,  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 
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  
윤종복, 이상욱, 이종태,  
이종환, 정준호, 황철규  
의원(15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은 유치원과 초·중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유치원이나 초·중등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는 경우 교내에서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, 교육활동 중 차량화재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, 일부 학교는 학교시설 미개방에 따른 운영 사업자 위탁운영 등이 곤란한 측면도 존재함.
- 이에 유치원과 초·중등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함(안 제7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 
및 같은법 시행령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. 다만, 학생 안전을 위해  
교육연구시설 중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  
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의3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(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, 이하 “총주차대수”라 한다)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<u>1.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의3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1.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. 다만, 학생 안전을 위해 교육연구시설 중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3 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)제1항제1호에 예외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중헌

추계분석관     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